

2023년도 2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.

□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5억 1천 2백만 원

○ 예비비 사용 사유

-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시 사망자의 유족 3명이 우리 시 및 고시원 업주·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('21.9.28.)과 관련, 대법원의 최종 판결('23.3.16.) 결과 우리 시와 고시원 업주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였음.
- 본 소송과 관련, 우리 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판결 일정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, 2023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
- 기 편성된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억 1천 2백만 원을 배상금으로 집행하였음

○ 세부내역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511,539,722	
소방행정과	소방활동지원	배상금(305-01)	511,539,722	'23.4.28.